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 기업

고용24

고객센터 | 관리자 | 글자·화면 설정

로그인 | 회원가입 | 검색

채용지원 | 직업 능력 개발 | 기업지원금 | 확인 및 신고

전체 메뉴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전체 |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채용준비 | **교육훈련** | 고용장려금 | 확인·신고

인재찾기

구인신청

구인관리

맞춤인재정보

외국인고용신고

사업주 외국인관리

인재정보와 고용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인재정보 수 > **1,131천 건**

고용장려금 지급액 > **865억원(11월)**

용어 사전 | 이용 안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 기업

고용24

로그아웃 | 29분43초 | 마이페이지 | 검색

채용지원 | 직업 능력 개발 | 기업지원금 | 확인 및 신고

전체 메뉴

마이페이지(기업)

홈 > 마이페이지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 신청 관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관리 | 채용자명단관리 | 지원금관리 | 사업민족도

기업정보

회원정보수정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주소

참여 신청 현황

프로그램 정보 | 운영기관 | 추가 작업

용어 사전 | 이용 안내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신청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고용촉진

특별고용촉진, 신종년(기존 신청자)

국내복귀기업 고용

일자리함께 고대제·실근로

지역고용촉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존 신청자)

고령자 고용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출산·육아

유연근무

고용유지

산업·일자리전환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1. 작성 중 02. 제출완료 03. 처리중 04. 처리완료

안내

장시간 내용을 작성하시는 경우 저장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메모장 등에 먼저 작성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안내

담당 운영기관 선택

담당운영기관 * 5

필국상공회의소(경북)

운영기관 검색

대표 사업장 현황

사업연도 * 2026 기업유형 * ☐ 개인 ☐ 법인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관리번호 검색

주소

피보험자 합계 * 명 설립일

대표 사업장 등록 시 주의사항

기준 피보험자수,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장 합산)

명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평균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지원한도

명

지원유형

☐ 수도권

☐ 일반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

☐ 특별지원지역

* 기준 피보험자 수(50%)로 조회

사업참여유형

☒ 사업단위

☐ 사업장단위

사업참여유형 기준

매출액심사제외

☐ 매출액 심사 제외(면세법인사업자 등 매출액 심사 제외 경우)

7

사업개시일

YYYY-MM-DD

매출액

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부가가치세표준과세증명원상 집계액 2024, 2025년백1

매출액 시작일

YYYY-MM-DD

매출액 종료일

YYYY-MM-DD

매출액 입력 방법

*매출액 산정기간
부가가치세표준과세증명원상 2024년도분 일시, 2024.01.01.~2024.12.31.
2025년도분 일시, 2025.01.01.~2025.12.31

매출액 산정 기준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 지식서비스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비수도권 산단입주 종건기업

지원대상 기업 기준

채용계획

*올해 동안 사용해야 하므로, 넉넉하게 신청하세요. 못 채워도 불이익 없음

추가 +

삭제 -

채용예정인원

×

명

근로계약형태

선택

근무시간

주

×

시간

월급여

×

원

* 근무시간은 주 28시간 이상만 가능

채용자 정보

8

*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채용자 있을 경우 체크 후 추가

* 해당 채용자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

삭제 -

성명

성명을 입력해 주세요.

채용일

YYYY-MM-DD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일반전화

선택

'-'를 제외하고 입력하

담당자 팩스

선택

'-'를 제외하고 입력하

담당자 이메일

×

@

×

기타(직접입력)

9

첨부파일

[첨부파일 업로드]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택스 2024. 2025년도 중 백1)

10

첨부파일 등록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원하는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오세요.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지식서비스산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아니오”에 체크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 예 ☒ 아니요
②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예 ☒ 아니요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요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요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종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요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요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요
⑧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력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요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요

지원제외의 청년(채용일 기준)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확인
③ 취업예로청년 유형 ①~⑨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 유형II는 해당사항 없음	☒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확인
⑨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	☒ 확인
⑩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확인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나,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금(장려금, 보조금 등 명칭 불문)의 반환을 명령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동 사업의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요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주명 * x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x - x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 사업주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선택)

사업주 일반전화 *

선택

-

0000

0000

0000

선택

-

0000

0000

0000

선택

-

0000

0000

0000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 제1조(목적)
 - (이의 "운영기관"이라 함은 한국노동부(고용노동부)와 "참여기업"이라 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제2조(지원내용)
 -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 최소 1년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청년이 2년 연속서 참가고용인세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처리지침(23년 별도 배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제3조(선정 지원 우선 지원)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순서로 지원 한도를 결정하며,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지원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제4조(근로조건)
 - ① 참여기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입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5조(참여청년의 고용형태)
 -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과 기간의 장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6조(청년배우)
 -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점검(문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제7조(준수사항)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⑧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 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별 분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은 청년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직월부터 신청하여 2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씩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위탁별 지원금과 참가고용인세비율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지원금별 회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력 여부, 임금 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관할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
 - ⑥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⑨ 제9조(지원금의 반환)
 -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이 운영기관과 상호의해 부정 부당하게 지원금과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 부당하게 지급 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⑩ 제10조(합의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확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당부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무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무관리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⑪ 제11조(제재)
 -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등 지침에 따라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⑫ 제12조(준칙)
 -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실통합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따른다.

※ 사업장에 신청서에 대해 **회계(세무) 처리**한 경우, 본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제

임시저장

완료

※ 전산에 최종 신청까지 완료하시면, 심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철곡상공회의소 ☎054-974-0850]